

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9. 8. 이상철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5.

(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이상철 의원

나. 제안이유

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, 위탁운영,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·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 수립(안 제3조~제4조)

다.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(안 제5조)

라. 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 등(안 제7조~제8조)

마. 참여자 지원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」

나. 협조부서: 건강관리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: 2021. 9. 30. ~ 10. 5.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가. 조례제정 취지

- 본 제정안은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됨

나. 조문별 주요내용
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
 -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였고
-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
 -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후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였고
- 안 제6조에서는
 -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해
-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
 -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탁 운영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명시함

- 적절한 신체활동은 비만과 성인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신체활동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
-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조차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신체활동 장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계획 수립·시행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¹⁾하여 2021년 12월 4일 시행예정이며, 현재 서울시 5개 지자체²⁾가 조례 제정·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으로 전망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신체활동 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제정안으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·시행) 및 제16조의 3(신체활동장려사업)

2) 서울시, 강북구, 노원구, 서대문구, 구로구